

## 現行 家族計劃事業 目標量制度 改善方案

高 甲 錫

(前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特任研究員)

次 >

- I. 緒論  
II. 目標量制度의 背景과 現況  
III. 最近의 事業目標對 實績 現況

- IV. 現行 目標量 制度의 問題點  
V. 現行 目標量 制度의 改善方向  
VI. 結語

### I. 緒 論

1960年代初政府는 貧困打破와所得向上을 위해經濟開發에着手하였고 이는 強力히 推進하는 과정에서 家族計劃事業이 國家施策의 하나로採擇되었다.

本院 家族計劃事業은 多少起伏을 있었지만 3~5個年計劃期間에 純淨率를 推進하여 所期의 成果를 擡揚하였다. 주 1960年代 初의 家族計劃實踐率 9%이제 1988년에 와서 77%線을 上廻되었음을 眼に하는 事實에 附註充分히 説明해 두고자 한다. 이는 避妊女性의 定着은 戰後(2次世界大戰以後)의 日本을 除外한 15個例剖은 成功事例로서 世界的으로 本院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避妊實踐 水準과 그에 따른 形態(pattern)가 日本과는 相異하다. 日本에서는 戰後에 人口危機意識의 高潮로 驅り起아 自生의 인 家族計劃運動이 展開되고 國民의 共感帶가 形成되어 避妊이 生活化 되었으며 主要 媒體에 依存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家族計劃普及이 政府가 主導하는 하나의 事業(program)으로 出發하였으며 主要 施術為主(子宮內 裝置以男、女 不妊術)의 避妊形態를 이루고 있다.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은 1960年代初期에 現代經濟開

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되어 人口成長 抑制側面을 強調하였고 이것은 바로 經濟成長目標를 成就하는 하나의 要素로서 取扱되어 政策化하였다.

따라서 政府가 推進하는 長短期 經濟開發目標에서 人口目標는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家族計劃事業(出產調節)의 目標量이 바로 人口目標와 離接的으로 聯關係 되었다.

家族計劃 目標量을 實績화 하는데는 우선 所要豫算이 計劃되고 中央에서 策定된 豫算是 地方政府에 依據執行되는 特徵을 가졌으며, 事業遂行을 위하여 組織, 人力與 報告書式等이 갖추어져 1960年代 初부터 根幹이 逐계 바꾸어 事業 않고 有能한까지 持續的으로 推進되었다.

그結果 우리나라 可妊女性의 家族計劃을 生活化하는 境地에 이르렀으며 이제 1960年代의 高出產水準(合計出產率이 6)에서 1980年代의 後期에는 低出產水準(合計出產率이 1.6)을 示顯하고 있다.

이와 高率의 避妊水準과 低率의 出產力水準을 提示하는 人口學的 指標와 이에 影響을 주는 社會·經濟的 指標를 中心으로 現行 家族計劃 目標量制度에 對해 人口目標와 대비하여 그것을 吟味하고 檢討해보면 한 時點에 이르렀다고 생가된다.

따라서 本考는 目標量制度의 背景과 最近의 目標量對 實績, 人口目標와 家族計劃 目標量의 關係 등을 簡單히 考察하고 現行 目標量制度에 對한

表 1. 人口目標

年數	總人口 (千名)	出生率	死亡率	移民率	人口 成長率
1987	42,082	19.1	6.0	0.9	12.2
1988	42,593	18.7	5.9	0.9	11.9
1989	43,099	18.3	5.8	0.9	11.6
1990	43,601	18.0	5.8	0.9	11.3
1991	44,094	17.6	5.7	0.9	11.0
1993	45,052	16.8	5.7	0.9	10.3
2000	48,018	14.7	6.2	0.8	7.7
2023	52,574	11.0	10.3	0.7	0.0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推計人口(1985年人口센서스  
結果基礎), 1986. 3월.

推進되고 있으며, 그의 成果는 人口增加率에 絶對的  
인 影響을 주고 있는 出產力에 最近에 와서 크게  
作用하기 때문이다.

參考至 1980年과 1985年 人口센서스 結果值에  
의해 展望한 人口目標를 紹介 하면 表2와 같다.

表 2. 新·舊人口展望의 比較

年度	總人口(千名)		增加率(%)	
	新推計 ('85基準)	舊推計 ('80基準)	新推計	舊推計
1980	38,124	38,124	1.57	1.57
1990	43,601	44,261	1.13	1.34
2000	48,017	50,066	0.77	1.00
2010	51,028	54,634	0.43	0.78
2020	52,473	58,415	0.10	0.55

資料：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推計人口(1985年人口센서스  
結果基礎), 1986. 3월.

表2의 1985年人口센서스結果에 依한 人口推計  
는 1980년의 그것보다 西紀 2020년의 人口規模에  
있어 무려 600万이라는 差異를 提示해 주고 있다.  
換言하면 1980~1985년의 出產力 低下 样相은 1  
980年 當時豫想하지 못한 만큼 頗著 韻音을 立證해  
주고 있다. 이는 初婚年齡이나 人工流產 등 人口學

의 要素보다 家族計劃 普及이 이期間에 刮目할만  
치 이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家族計劃  
實踐水準을 보면 1980~1985年에 約 50%에서 7  
0% 水準으로 上昇하면서 출產力가 急激히 低下  
하고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앞에서 說明한 人口目標에 依해 年間出生數을  
豫想하고 그를 實現하기 위해 避姪普及量(政府負  
擔과 自費負擔을 包含)을 算定함으로써 全國水準의  
避姪普及目標量이 策定된다(表3).

表 3. 總避姪普及目標量: 1987~1991

(單位: 千)

方法	1987	1988	1989	1990	1991
子宮內裝置	270.1	286.2	302.4	317.1	330.2
精管手術	60.6	64.0	67.2	66.8	66.3
卵管手術	186.9	194.6	201.7	199.9	198.2
口服避姪藥	274.5	289.0	303.4	318.5	330.3
其他	475.3	507.1	539.8	574.1	605.6
計	1,898.1	1,966.0	2,031.0	2,082.1	2,118.6

資料：趙南勳, 人口增加抑制政策 推進方向, 人口政策 세미나,  
1987. 11.

表3에 依하면 政府負擔이 及 自費負擔이 간간에  
普及해야 할 總物量이 1987년의 경우 子宮內裝置를  
約 27万件, 精管手術이 6万件, 그리고 卵管手術이 19万  
件, 口服避姪藥이 27万件이咯(月), 卵管이 48万件  
(月)이고 끝으로 其他避姪方法 卵 膀外射精, 週期法,  
發泡性錠劑 등 年間 65万名의 當時使用者를 確保  
하게 되면 避姪實踐率은 72.7% 水準에 이르게 되고  
出產率은 19.1에 到達하여 人口成長率은 1.22%를  
成就하게 된다는 論理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總量  
目標量이 6次5個年計劃期間에 차질없이 進行된다  
면 1993年에 人口增加率이 1%에 이르게 되고 그  
結果는 西紀 2023年項에 人口规模이 約 5,300万水準이 될 것이라  
라는 長期目標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 6次5個年計劃期間의 目標 總量은 政府부  
분 담당하는 目標量은 어떤 韵音을 獨立線으로 표기  
가에 對해 論爭의 素地가 있으며 此 목표量制度

問題點(長短點)과改善方向을 提示로 삼았다. 万善에 이 提示가 빠아진다면 家族計劃事業 역시 하나의 轉換點을 이루게 되고 이는 從來의 政府부담物量 為主의 物量的 普及 戰略으로부터 自費부담 為主의 物量的 普及 戰略으로 轉变하는 轉機가 될수 있을 것이다.

## II. 目標量制度의 背景과 現況

家族計劃事業 目標量制度는 事業初創期로부터 按到 制度의 裝置로서 1966년에 定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保健社會部는 그 당시 家族計劃事業 10個年計劃 目標量 設定하였는바 1962~1971년의 10年間에 子宮內裝置는 234万, 避姪藥 35万싸이월(月), 精管 20万, 婦唇 15 싱(月), 其他 41万을 普及하면 計劃期間의 最終年度인 1971년에는 避姪實踐이 45%에 이르게 되고, 出產率은 2.7, 死亡率은 7이 되며, 人口增加率은 2.0%에 이른다는 計劃內容이다.

이 計劃은 出產數 調節을 위한 避姪方法을 物量化 하므로써 中央政府의 豫算에 反映되어 그것이 地方政府(市·道)에 示達되어 執行 되었다. 通常이 長期計劃 대지 5個年計劃에 根據하여 事業目標量은 政府豫算에 反映 되었으나 當우에 따라서는 政府財政의 不足으로 充分히 反映되지 못한 때도 있었다.

事業計劃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이 目標量이 全國 水準에서 確定되며 保健社會部는 具가지 基準을 可姪女性數, 要員數, 前年度의 實績 그리고 現在使用者의 方法과 自費負擔與否 등을 參考하여 每年 各 市·道別呈下向式 割當을 試圖하게 되고, 配分된 市·道目標量은 다시 區·市·郡保健所單位로, 그리고 邑·面單位까지 目標量이 配定된다.

配定된 目標量은 主로 邑·面에 그리고 保健所에 配置된 要員에 依해 普及되며, 普及量은一定書式에 依해 上部에 報告된다.

報告된 資料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研究陣에 依해 分析 評價되어 事業管理者에게 環流(feedback) 하는 一連의 目標量에 隨伴된 諸計劃, 執行, 評價過程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通稱 目標量制度라 해도 無妨할 것이다.

이 目標量制度는 그 自體가 事業을 統制(control)

하는 機能이 賦與되어 있다. 그러나 目標量이 過多하거나 過少하여 適正量이 되지 못할때는 一線事業의 質을 低下시킬 수 있는 素地를 提供해 준다. 그것이 特히 避姪方法別로 策定될때 特定方法에 對해 適正量이 되지 못할때는 避姪方法의 選好度는 커녕 그자 物量為主의 普及에만 치우쳐 差비스의 質을 點檢해본 기준이 없다. 그런데 現行 目標量制度에서는 앞에서 言及한 計劃, 執行 및 評價業務는 實質의 으로 執行을 除外하고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과 保社部가 協力하여 運行하고 있다.

目標量制度에 있어 그 核心은 全國水準의 目標量의 算出(策定)과 그에 따른 合理의 市·道別配定 呈市·道에서의 區·市·郡配定 問題이며 나아가서 이 目標量의 達成與否에 따른 事業의 効果(여기에서는 出生防止數)와 効率(出生防止當費用)側面이 事業性格上 역시 아주 重要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事業初期에는 目標量達成이 容易하지만 年輪을 거듭할수록 目標量과 實績이 无限大로 膨脹할수 없으며 目標量이 伸縮性 있게 調整된다. 그런데 家族計劃目標量 역시 多多益善이고 實績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概念은 그것이 初期普及段階에서 潛在受容者가 넘쳐 乏할때 주需要者가 많고 供給이 적을때는 妥當성이 있겠지만 需要·供給의 均衡側面에서 보면 限界需要者가 적을에도 不拘하고 供給만 늘리게 되면 過剩供給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弊端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6次5個年計劃에 反映된 目標量을 中心으로 그가 含蓄하는 指標와 制度의 仁側面을 一覽보자 한다.

첫째 人口目標를 보면 表1과 같다.

表1에 依하면 우리나라 人口目標는 그 規模面에서 1987년에 約 4,200만인것이 2,000년에는 5,200万에 이르게 되고 다시 2023년에는 5,300万에 到達하여 略의 成長 す 静止人口가 된다는 内容이다. 特記한 事項은 人口成長率 1%達成을 1993년에 實現한다는 目標이다. 이 長短期 人口目標의 妥當性에 對해서는 本考에서 論議하지 않았으나 1985年以後豫想外의 出產力低下로 인하여 1988년에 1%成長率을 이미 達成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이 하의 저하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家族計劃事業이 國家의 政府事業으로

와核心을 이룬 課題이기도 하다.

表 4. 政府負擔 避妊目標量

(單位 : 千)

方法	1987	1988	1989	1990	1991
子宮内装置	176	186	197	206	215
不妊手術	210	220	229	227	222
避孕薬	119	127	135	144	151
먹는避妊薬	69	72	76	80	83
計	574	605	637	657	684

資料：趙南勳, 人口增加抑制政策 推進方向, 人口政策 제미나, 1987, 11.

表4에 依하면 不妊術의 경우 政府負擔이 1/3自費負擔에 關係없이 1987年度에 普及 해야할目標總量은 約 25万件이고 이의 85%인 21万件이 政府負擔換算하면, 保健所를 通한 무증(施術 確認證)에 依해 指定醫로 하여금 施術케 하므로써 人口目標를達成할수 있는 家族計劃目標量이다.

그런데 이 目標量은 政府에 依해 떤아도려지지 않고 約 31万件으로 增加했으며 年末實績은 100%以上을 見여줄 展望이다.

豫算上 確保된 1987年度의 避妊目標量을 各市·道에 割當되며 事業効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件數為主의 實績과 함께 市·道別로 受容者の 特性에, 즉 年齡과 現存子女數에 依한 加重值을 適用하여 市·道別 避妊使用年數(Couple Years of Protection)로 換算하고로써 一種의 實績(受容者 數 및 受容者 特性)競進樣相을 見여주고 있다. 더욱이 各市·道에서는 管內區·市·郡에 目標量을 配定할 경우 現行 市·道別 評價體系를 意識한 나머지 10~20%의 超過(追加)目標量을 割當하고 있어 그것을 全國水準에서 합산해 보면 不妊目標量이 3万件을 上廻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現行 目標量制度에서 政府目標量 自體의 妥當性을 再吟味해 보는 것도 意味가 있다 하겠다.

最近에 策定되고 있는 避妊方法別 目標量이 適正水準인가? 하는 問題와 더불어 目標量制度自體를 다음 몇가자 次元에서 깊이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첫째로 公共事業으로서의 政府 家族計劃事業이 언제까지 持續되어야 하는가?勿論 人口計劃과 그를 達成(充足)가 關係하는 事業目標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人口計劃上의 適正人口(Optimum Population)는 어떻게 볼것인가가 先行되어어야 한 問題이다. 可及의 早速한 時日內에 需의 成長을 가진다는 것이 좋다는 見解가 支配의 이지만 그것이 너무 빨라도 實現段階에서 그리하고 以後에 일어나는 人口規模나 構造面에 對한 長期人口計劃이 妥當性을 提示하지 못할 경우 問題는 없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둘째로 現行 目標量의 適正量 與否 問題와 함께 이를 達成하고 事業成果를 舉揚하기 위해 市·道別 競進樣相을 보일 必要가 이제 있겠는가 하는 問題이다.

셋째로 家族計劃이 痘疫 상부 하게 家族保健 대지家庭福祉 次元에서 推進되게 하기 위해선 母子保健事業과 어떻게 統合의으로 事業이 進行되어야 하고 事業的範圍는 어떻게 緊야 하는가에 對해서도 아직 確實한 青寫眞이 없다.

其他 여러가지 問題 提起가 可能하다. 그러나 本章에서는 目標量制度의 背景과 現況을 簡單히 살펴 보고 그동안 特히 最近의 目標量과 實績을 中心으로 한 諸 問題와 더불어 現行 目標量制度의 長短點을 指摘할 後章에서 論及코자 한다.

### III. 最近의 目標量 및 實績現況

第5次 5個年 計劃期間(1982~1986)의 人口目標는 最終年度(1988年)의 人口規模를 約 4,184만으로 設定했으며 人口成長率은 1.49%로 推定하였다. 이 目標 / 設定은 1980年度 人口 셈서스 資料에 依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85年度 人口 셈서스 資料와 其他 關聯資料를 動員하여 얻어진 1986年度의 人口規模와 人口 成長率은 각각 4,157만과 1.24%를 提示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當初에 計劃했던 1986年度의 人口規模와 人口成長率目標는 早期에 達成되었고 結果的으로 人口規模에 있어서는 27万의 超過達成(抑制)이 있었으며 人口成長率에서도 마찬가지로 0.25%의 超過達成이 있었다.

이렇게 人口目標를 앞자르게 된 것은 1982~1

88년과 89년間に從來에 想定한 대로의 程度의 출산력低下 現象이 있어보는 嘘설인 것으로 分析된다. 그동안은 이 출산력 저하 現況은 因果面에서 育成으로 어떤 要素가 何れ作用 했는가에 對해 신체明瞭觀不 하다.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時間(1982~1986)에 政府 家族計劃事業이 그 어느 때 呈나는 活潑화를 推進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男·女의 不妊術의 需要者의 増加呼應하는 경제社會普及되었기 때문이다.

5次 5個年計劃을達成하기 위한 政府避妊目標量(5次 5個年計劃에 反映된 物量)과 實際의 需要(普及)量에 針對政府供給量(目標量)은 明瞭超過達成이 이루영자(表5) 結果의 見る 출산력低下를 加速化 하였음을 意味한다.

表 5. 第5次 5個年 計劃上의 政府支援 避妊目標量 및 實績

(단위: 1,000)

避妊方法	1982		1983		1984		1985		1986	
	目標	實績								
子宮內裝置	203.0	199.1	265.0	213.1	302.0	195.3	395.0	176.9	382.0	234.4
不妊手術	220.5	286.7	227.5	427.0	227.5	378.8	247.0	327.7	238.0	125
口服避妊藥	115.0	113.0	145.0	82.4	150.0	54.7	170.0	44.0	180.0	45.8
其他	98.0	101.6	122.5	127.3	137.2	129.7	150.5	124.9	171.5	108.3
計	636.5	700.4	760.0	859.8	816.7	758.5	962.5	673.5	791.5	701.0

資料: 1) 經濟企劃院 第5次 5個年計劃, 1983. 2) 韓國保健研究院, 1987 家族保健事業評價大會報告書, 1987.

즉, 1982년에 約 64만名에(年間使用) 該當하는 避妊 씨비스를 供給한 목표를 세웠으나 實際呈는 70만名에 供給 하였을 때 目標를 輕鬆 달성(約 9%超過) 實績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避妊效果를考慮할 때 不妊術이 많아 普及 되므로써 避妊年數(Couple years of protection)로換算해 보면, 實績은 目標量의 121%(目標量은 約 215万CYP, 實績은 261万CYP)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次 5個年計劃期間의 最終年度인 1986年에는 目標物量이 約 97만名인 것이 비추어 實績은 70만名에 不過하여 28%의 目標量未達現象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이는 不妊을 除外하고는 子宮內裝置, 陽子避妊藥 그리고 避孕의 實績이 低調하였기 때문이나. 그린데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避妊의 效果(出生防止에 미치는 影響)를考慮할 때 實績은 目標量의 9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1986년의 5年間의 目標量과 實績은 普及人員과 避妊年數의 각각 比較해 보면 人員(物量)面에서 9.9%, 避妊年數面에서 12.0%에 이르고 있다. 즉 同期間에 普及人員(年間繼續使用으로 假定)은 目標量이 約 415만이었고 實績은 375만이며, 避妊年數

目標量은 1,260万이었으나, 實績은 1,513万이었다.

家族計劃普及(受容)과 關聯하여 實質의 으로 出產力에 미치는 效果는 妊娠防止年數에 依해 测定되므로 앞에서 指摘한 人員單位 目標量은 加重值을 適用하지 않은限 無意味하며 避妊年數 目標量과 그의 實績이 評價基準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高은 實績(目標보다도 20%以上 超過達成)을 올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甲論乙駁 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時間에 不妊目標量이 上向策定 되었으며 이를 充分히 供給 할 수 있는 潛在受容者が 있었기 때문이다.勿論需要者の 기호에 맞도록 씨비스의 質(施術費의 現實化)을改善함과 同時に 施術醫의 動機誘發促進, 一線 家族計劃 要員과管理者의 目標超過達成志向의 競進(評價大會를 通한 市·道別 實績順位通報)등이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1982~1986년에 保社部가策定하여 各市·道에 上達한 目標量配定과 그의 實績은 早전 表6과 같다.

表6에 依하면 單純한 物量面에서 實績이 目標量을 上廻하고 있을 非然 아니라(實績이 目標量의

表 6. 保社부가策定(豫算反映)한 目標量 및 實績

(單位 : 千)

避妊方法	1982		1983		1984		1985		1986			
	目標	實績	比率	目標	實績	比率	目標	實績	比率	目標	實績	比率
子宮內裝置	263	199	98.1	210	213	106.6	190	195	102.8	170	177	104.1
不妊手術	247	287	116.8	400	427	106.7	313	379	121.0	313	328	104.8
計 個	98	102	103.7	123	127	103.5	120	130	108.1	120	125	104.1
帶 避妊藥	125	113	90.7	67	82	123.0	50	59	118.4	38	44	116.3
計	673	701	-	790	849	-	673	763	-	641	674	-
	703	717	-									

資料：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年度 家族保健事業評價大會 報告書, 1987. 4.

註：表5와一致하지 않는 것은 四捨五入으로 因합니다.

106.4%) 避妊效果를 重視한 避妊年數(CYP)面에서  
도 108.5%의 實績을 1982~1986年期間中에 舉揚하였다.

1986年的 경우 子宮內裝置에 限하여 93.4%의  
未達現象을 보였으나 他 避妊 目標量은 1005를  
超過하고 있다. 子宮內裝置가 未達되었다 하더라도  
他方法 特히 不妊術이 105.4%나 實績을 올렸기  
때문에 避妊年數面에서 代替效果를 가지와 結果의  
으로 103.4%의 實績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1982~1986年의 目標量 對 實績을 보면  
는 100%를 超過하고 있다는事實을 注意깊게 觀察  
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目標量의 重壓感 때문에  
物量為主의 供給에 치우친 나머지 實的 事業을  
展開할 수 없다는 從事員의 與論도 없지 않으나  
높은 實績을 注意깊게 觀察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念頭에 두면서 다음 章에 現行 目標  
量制度의 問題點에 대해 보다 具體적으로 指摘해  
보고자 한다.

#### IV. 現行 目標量制度의 問題點

現行 目標量制度는 그 背景面에서 人口增加率  
나아가서 出產率抑制라는 目標設定이 있으므로써  
必然의으로 避妊方法의 目標量策定을 隨伴하게  
되었다. 이 制度가 지난 4半世紀에 걸쳐 카다란  
修正없이一贯되게 推進되었으나 그 過程에서 問題  
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目標量制度改善과 關聯된 代表의 研究

는 綜合評點制度 示範研究(1975), 自費負擔 家族計劃  
受容可能性에 對한 調查研究(1979), 家族計劃  
事業 目標量制度 改善研究(1979)等을 列舉할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들 諸研究와 1970年代末에서  
現在까지의 事業變遷 그리고 우리나라의 全般的의 인  
社會·經濟的 與件變動을 감안하여 現行 目標量制度의 問題點을 提示코자 한다.

첫째로 人口目標 設定에서의 問題點이다. 從來  
5次5個年 計劃에서는 西紀2000年에 人口增加率을  
1%로 低下시킨다는 目標를 세운바 있다. 그러나  
6次5個年 計劃에서는 西紀1993年에 1%를 达成한  
다는 目標를 修正하였다. 이렇게 人口增加率 1%  
達成目標年度를 7年이나 앞당기게 된 理由는 19  
80~1985年에 出產力 低下 現象이 顯著 했기 때문  
이며 이는 그期間에 家族計劃 事業이 크게 活性化  
하여 避妊目標量을 超過達成했기 때문이며, 이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다. 더욱이 1995年 까지 合計  
出產率을 1.75 水準에 接近시킨다는 出產力低下  
目標는 1981~1984年 出產力 激減 傾向으로 見아  
그以前에 成就된 展望이고 人口增加率 抑制目標인  
1%線은 1993年 以前에 半世紀나 1世紀를 考慮하면서  
細密히 檢討되어야 한다. 따라서 人口目標가  
家族計劃事業 目標의 超過達成에 依해 繼續해서  
앞당기진다면 依기에 問題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避妊目標量과 直接的으로 關聯된다. 適正人口의  
理論과 함께 人口增加率이 靜止하는 年度, 그 當時  
의 人口構造나 規模, 그것에 到達할 때 까지의 變遷  
推移, 到達以后의 動向等이 우리나라 社會·經濟·

文化的諸侧面에서 慎重히 觀察되고 細明되어야 할 것이다. 順說的으로 短期의 으로 볼 때 1993년의 人口增加率目標 1%는 이미 1988년에 조기達成된 것을 破格의 한 家族計劃普及에 依存했다 해도 過言이 아님에 繼續해서 家族計劃普及을 強力하게 그것도 家族計劃에 反映한 目標以上으로 推進해야 할 것인가에 對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既視의 眼目에서 人口計劃自體가 보다 深度있게 舉論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家族計劃目標가 特히 不姪術普及의 消極的 効果와 함께 그것이 慎重하게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 方向은 6次5個年計劃에 反映된 人口目標가 至上의 計劃이라면 이를 別면 치하기 위한 家族計劃普及은 이제 政府事業量을 積차적으로 출예도 될 것이다. 만약에 人口增加率 1% 目標와 零의 成長(2020年)을 훨씬 앞당기기 위해서 避姪目標量을 現在의 水準이나 그보다 더 높게普及하게 되면 이의 衝擊(Impact)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看된다.

둘째로 6次5個年計劃에 反映된 避姪普及總量目標와 대불어 6次5個年政府目標量(名目上의 手數料)가 있으면 政府負擔의 妥當性問題이다.

우선 避姪普及總量目標가 너무 커다. 왜냐하면 人口增加率 대자出產力目標가 早期에 達成됨에도 불구하고 總量目標를 100%成就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人口抑制現象이 일어나 그의 反應이 앞으로의 人口推移에 負的作用을 할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提示된 避姪普及總量目標는 Bongaart 方式에 依해 計算된 物量인데 可姪女性產出에서 여성의 最近의 年齡別 結婚構成比(初婚年齡의 上昇傾向, 즉 20~24歲女性의 1985年度 離婚率結果)는 有配偶構成比가 0.278인 것에 比해 6次5個年計劃에 反映된 避姪目標量을 略보다 入力��에는 0.281로假定하였으므로써 可姪女性數를 微細하나마 精確推定하였다는 事實과 避姪效果面에서의 中斷率를 너무 高게假定했다는 事實이다. 特히 中斷率의 積累는 앞으로의 家族計劃事業을 質為主로 轉換하였을 때繼續使用率의 向上을前提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의 事業環境에서 例) 避姪藥이나 子宮內裝置等이 使用하는 婦人들이 保健所組織網과 接觸한 경우 不姪術을 強力히 勸告里에 있으면서 結果的に 中斷率를 높이게 된다. 만약에 不姪術 目標量이 減量된 경우 그리고 避姪藥劑

使用前後의 管理가 簡化되어 이루어진다면 中斷率를 低下될 것으로 猜測된다. 더욱이 避姪藥劑를 多樣화한 경우 中斷率이 낮아질수 있다. 臺灣의 경우 1985년에 3個의 子宮內裝置類型에서, loop, Cu-T, Multiload 等의 投入, 12個月까지의 中斷率이 각각 0.4462, 0.2904 그리고 0.2661이었다. 臺灣의 이 中斷率指標는 示唆하는바 그것을 多樣化하면 中斷率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도 이러한 避姪戰略이樹立될때 또다른 中斷率低下現象이 일어날수 있다. 이런 것들을 考慮할때 中斷率을 낮출으로써 繼續使用者를 더 많이 確保할수 있고 이를 避姪總量目標에서 新規受容者の 數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6次5個年計劃에 反映된 避姪目標總量은 너무 많게策定된 것으로思料된다.

셋째로 既제策定된 避姪目標總量을 다시 政府供給에 依한 目標와個人負擔(自己 스스로 알아서 解決, 政府受惠가 아님)目標로 分類하는데 있어 政府供給分을 너무 離개策定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問題로 提起될 수 있다. 最近 調査資料(1985 家族保健實態調查)에 依하면 現在使用者의 政府受惠, 個人負擔別 分布는 顯著 example 不姪術의 경우 83:17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避姪總目標量은 不姪術을 政府·自費比率에 있어서 어떻게 象想해야 하며 어떤 方向으로 事業을 當하고 가야 하는가가 問題이다. 1987年度의 不姪術目標總量은 247,500件으로 이 중 210,400件은 政府目標量, 나머지 37,100件은 自費負擔에 依해 受容되는 情況이다. 그런데 政府目標量은 避姪總量의 85%에 該當되며 더욱이 1980~1986年の 政府不姪量 供給趨勢로 朝아 累積의 으로 看아진 現在使用者의 政府受惠比率(83%위, 17%는 순수자비 및 의료呈轉海內)을 그대로 適用하여 83:17로 供給計劃을樹立한다는 것은 약간 無理하다는 생각된다. 왜냐하면 現在使用者의 政府負擔與否는過去 政府家族計劃政策에 따른 有(無)料事業方向과 密接히關係가 있고 나아가서 政府의 福祉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家族保健政策과 國民의 社會·經濟·文化水準과 純密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考察할때 政府負擔은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 1987年の 政府目標量은 12水準에서 떨어들었다 하여도 6次5個年計劃期間의 最終年度인 1991年頃에는 이것이大幅減少되

는 方向으로 政府 避姪目標量(例정내 不姪術)을 調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린데 또다른 問題는 政府目標量 중 일시 避姪方法인 子宮內裝置, 또는 避姪藥(具 胎盤等)을 어떻게 自費와 政府負擔으로 區分해서 普及하며 結果의 으로 1987年度의 避姪實踐率 目標를 達成하는가에 归結된다. 避姪年數面에서 特定方法은 目標量에서 많아지고, 어떤 方法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代替効果를 나타낸과 同時に 避姪嗜好에 따른 供給戰略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避姪文化가 아직 定着되지 않았기 때문에 政府의 事業方向에 따른 サービス의 質과 弘報機能 強化(商業網도 包含)에 依해 隨時로 調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는 政府事業量이 避姪目標總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높으며(1987년의 막는避姪藥은 政府事業量이 總量 25%이다. 그러나 過去 1984년의 避姪使用者는 政府와 自費로 區分하면 20:80으로 政府負擔이 높다)이라면 推移가 繼續될 것이라는 假定(目標)이 하나의 問題로서 부각될 수 있다.

셋째로 6次 5個年 計劃에 이렇게 높이 反映된 政府普及避姪 目標量은 當該年度의豫算確保(策定) 事情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許及한 바와 같이 目標量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豫算이 늘어나는段階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에 對한 實績은 100%를 超過한 水準에 이를수록 좋다는 見解가支配的인지는 몰라도 現實은 6次 計劃에 反映된 物量보다도 오히려 保社部가 目標量을 超過한過多하

게 策定하고 있다. 즉 表7에 依하면 :

1987年度에 策定한 全國 避姪目標量은 대체로 높다. 子宮內裝置의 경우 政府가 普及해야 할 避姪目標量은 6次 5個年 計劃에 反映된 約 16万件이며充分할에도 불구하고 25万件을 策定하여 全國의 各市·道에 配定示達하고 있다. 總量目標인 27万件 중 17万件는 政府가 普及한다는 計劃本體가 再檢討되어야 할 段階에서 오히려 總量의 95%를 普及한다는 것은 從來에 自費로 子宮內裝置를 使用하는 可姪女性을 政府負擔으로 바꾸어 끌어들인다는 것인지 또는 어떤 新規需要者가 있다는 것인지 不明確하다. 두 가지 모두는 人口學的으로 그리고 事業側面에서 分析해 볼 때 合理性를 缺如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策定된 目標量이 超過達成될 때額面數字(faced value)를 그대로 받아드릴 경우 우리나라 婦人の 出產力은 현격하게 低下된다는事實이다. 換言하면 1987年の 合計出產率인 1.6以下로 계속 低下될 展望이 서가 때문이다.

잠깐 1987年 目標量과 上半期(1~6月) 實績을 살펴보면 이렇게 過多策定된 目標量이 比較的順調롭게(?) 達成되고 있다는 現象이다. 즉 全國의 當該년에 子宮內裝置가 54%, 精管術이 54%, 卵管術이 58%, 혼동이 107%, 막는避姪藥이 16%, 月經調節이 50%로서 1987年度의 目標量은 無難히 達成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오히려 超過達城이 可能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果然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一言之下에 目標量本體가 過重하다는 從事員의一般的 與論과 實績間에는 어떠한

表 7. 1987年度 目標量 現況

(單位 : 千)

	子宮內裝置	不姪手術	막는避姪藥	混管	其他	月經調節
6次計劃에 反映된 總量	270.1	257.5	274.5	475.3	630.7	NA
總量에서 政府負擔分	162.1	214.4	54.9	95.1	-	NA
實際로豫算에 反映, 示達된 政府目標量	250.0	307.5	40.9	140.0	-	210.0

註: 1985年度 避姪方法別 政府:自費 負擔 構成比率 子宮內裝置가 58:42, 不姪手술이 83:17, 막는避姪藥이 20:80, 혼동이 15:85, 其他方法이 0:100이었음.

資料: 1) 保社部,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家族計劃事業進度評價, 1987, 1~6월 기준.

2) N. H. Cho, Family Planning Target Setting and Allocation in Korea, Monograph, Trainning Workshop on Family Planning Policy and Program Management, KIPH, August 1987.

乖離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하겠다. 이乖離現象은  
各市・道政府普及 避妊方法에 對해 그동안  
需要者가 있는나하는 問題와 (一線要員의 指摘事項) 그동안  
많이 政府目標에 吸收된 可姪女性이 있음에도 不拘  
하고 아직도 이들에 供給할만한 可姪女性이 豐富  
하게 있어 實績이 100%를 上廻할수 있는 것인가에  
對한 三律背反의 事業疑問을 떨쳐버릴수 없다.  
한편 6次5個年計劃에 反映하지 않은 月經調節이  
目標量化 하므로써 出產力低下에 적지않은 影響을  
준다는 것을 考慮할때 1987年 保社部 目標量은  
必要以上으로 過重하며 이것을 配定 實績화 하는데  
無理가 된다 하겠다. 이것들과 關聯시켜 問題點을  
提起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로 保社部가 確保한 年間目標量을 各市・  
道에 配定할때 그것이 科學의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 하는 問題이다. 全國水準에서 年間目標量이  
適合하다거나 潛在受容者가 많다면 불과도 그것이  
이제는 限界需要를 넘어 甚麼策定되고 있기 때문  
에 配定方法에 따라 市・道間의 不均衡을 가짐을 수 있다.  
더욱이 避妊實踐水準이 70%를 上廻할때  
따라 放任集團이 거의 없어진 狀態에서는 下向式  
目標量配定은 事業推進에 重壓感을 주고 積極量의  
으로는 100%以上을 達成한다 할지라도 質의 避妊效果  
내지는 家族保健次元에서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現行目標量制度에서 物量爲主의 目標量  
對 實績은 各市・道의 競進樣相을 促進하게 되고  
事業統計의 質을 低下시킬 慮慮가 있으며, 事業雰  
圍氣氛中에서 實績件數爲主로硬直化시킬수 있어  
서 이에 對한 再考가 要請되기도 한다. 특히 每年  
開催되고 있는 事業評價大會는 市・道別順位를  
決定해 주므로써 目標量消化能力과 더불어 나이가  
서 目標量의 過多問題와 함께 評價方法에 對해  
市・道間에 銳敏한 反應을 일으킨다. 따라서 避妊  
實踐率 77%를 記錄하는 現今에는 目標量의合理的  
配定이 어려울뿐이 아니라 그에 따른 評價(指數化)  
問題 역시 容易하지 않다. 그리고 이 70%線에서  
의 擴大普及量的側面보다 質的側面을 強調한  
事業方向을 取하려 되면 이와같은 市・道의 競爭의  
事業雰圍氣氛緩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7年度 11月에 開催된 各市・道家族保健係長  
會議資料에 依하에 家族保健事業推進上에 問題點  
및 改善事項 중 目標量 過多問題가 大多數의 市・

道에서 指摘하였고 評價方法의 改善를 舉論하였다.

그리고 目標量配定時に 各要素 即, 可姪女性數  
(이것은 15~24歲 女는 20~34歲 등 差異가 있음),  
要員數 및 實績을 參考하여 加重值를 適用한 것이  
며, 正確한 對象者數 把握을 위한 人口移動 現象을  
감안해야 함을 指摘하고 있다. 서울市의 경우 50  
0世帶의 無作爲 標本調查結果 83%의 高은 實踐率  
을 보아므로써 市以上의 普及對象婦人이 없음을  
暗示하고 있으며, 目標量의 縮小調整을 要請하고  
있다. 어떤 市・道는 일단 配定된 目標量을 再시  
區・市・郡으로 配定할 때 一定한 基準이 없으며,  
資料의 未備로 隘路事項이 많다고 指摘하였다.  
이러한 目標量配定의合理性과 適正性을 考慮할때  
목표量이 過多할 경우 地區・市・郡마다 事情이  
다르겠지만 事業內部에 表面化하지 않은 不實性이  
內在할수 있고 그 結果는 事業의 質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政府事業의 信賴度와 サービス의 質을  
의심케 만들 가능성이 커서도 排除할 수 없다. 더욱이  
現行 目標對 實績評價는 超過 實績을 無限定하게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實績高揚을 위해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傾向까지 있다. 이것 또한 問題點이  
아니될수 없다. 그리고 家族保健事業의 好은 評價  
를 얻기 위해 受容者의 人口學的 特性(年齢, 現存子  
女數等)을 不實 記載할 염려가 없지 않다.

여섯째로 現行 目標量制度下에서의 市・道 家族  
保健事業의 評價項目과 加重值範圍는 家族計劃  
이 60點, 母子保健이 10點, 人口增加 억제 施策이  
30點으로 되어있어 母子保健事業이 相對的으로  
그 重要性面에서 低評價를 받고 있다는 것이 問題  
點의 하나이다.勿論 母子保健事業이 지녀는 特殊  
性으로 因하여 事業統計의 正確性을 할수 없지만  
母子保健事業과 家族計劃事業을 統合의으로 推進  
하기 위해서는 그 重要度面에서 적어도 같은 次元에  
두어야하고 實質의 으로 兩個事業을 热心히,  
誠實하게 그리고 効果의 으로 推進할수 있는 適正  
事業量과 正確한 報告體制等이 갖추어져야 한 問題  
를 內包하고 있다. 適正量의 事業量이 주어진 경우  
一線要員에 對한 統制가 容易하게 되고 要員의  
統合의 活動이 이루어질때 家族保健事業으로서  
의 母子保健과 家族計劃이 名實相符한 福祉事業으로  
認定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째로現行目標量制度는目標量設定(企劃),目標量執行 및目標達成與否에對한評價, 研究 등에 中央에 서는 보건부와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目標量設定과 目標量 評與에 따른 實績評價를 담당하고 있으며 各市·道는 주어진 目標量을執行하고 있다. 그런데 現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反映社理論의 일 模型에根據(各種研究結果와 實績 등을 考慮)한 目標量은 노화시하고 可能性 높은 目標量을 增加로策定하여 그는 政府 謙算行政의 차량되어야 한다.

家族計劃에 關한限政府目標量이 이제 年次의 으로減量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可姪夫婦가 自己를 스스로費用을 包含하여 家族計劃에 關한諸般問題을 解決한다는前提是 있어야 한을勿論이다. 1~2名의 子女를 두고 斷產을 원하거나 태울 때 調節보조하는 可姪夫婦가 있을 때 그들이費用 때문에 그리고 痘마가 地點때문에 또는 其他事由로 政府組織網에 依支 했더니 過去로 그들이 費用을 경우 많은 政府目標量을 普及過程에서 虛實을 가지 올 수 있다. 長期的안眼光에서 본때 政府目標量은 實需要者를 罷羅할 수 있는 少量에 그치야 하고 家族計劃自體는 夫婦單位에서自律의으로 且是問題을 解決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에 政府目標量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한편, 中央에서 配定한 目標量은 市·道에서 다시 區·市·都으로 配定하고 이것을 實績化 하는데 各市·道는 그자 制一의 事業執行을遂行하고 있어서 市·道間에 事業의 多樣性을 찾아볼수 있는 것도 또한 問題이다. 避姪嗜好나 普及方案이 따를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빙은 目標量을 그저 消化하는데 겨를이 없어 地方特性이考慮되지 못하고 있다. 市·道自體가 目標量을 科學의으로 設定해 보고 그것을 执行하면 그結果가 어떤 効果를 가지오며 國家(政府)目標와 市·道間의 目標사이에 어떤 關係가 있는지에 對해 審思熟考한 立場에 있지 못한 것 역시 問題點의 하나이다. 换言하면 앞으로의 地方化時代에 對備한 家族計劃普及戰略이 再檢討되어야 한段階에 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째로 現行 目標量制度下에서의 避姪普及의 有料化 問題이다. 子宮內裝置는 對象者が 2,500원을 負擔하고 있으며 政府支援이 2,500으로서 施術醫는

5,000원을 受領하고 있다. 특히 避姪藥과 避姪器各各 환자 쌍이 200원씩 手數料를 負担하고 있다. 특히 男性不姪術은 38,000원, 女性不姪術은 43,000원, 2회의 月經調節(事實上의 人工流産)은 20,000원을 施術醫에 重支給하고 있으나 受患者는 전부 負擔하지 않는다. 이外 關聯하여 한 自費負擔家族計劃受客可能症에 對한 調査研究는 現行政의 避姪普及이 長期의 朝事業發展에 따라 商業網을 通過하여 有料化된다는 方面이 説明하다고 指摘하였다.都市地域에서는 政府 無料避姪普及 對象者는 特殊階層(低所得層)에 限하고 一般對象者는 有料避姪普及 方向으로 誘導해야 한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그런데 現에서 指摘한 手數料範圍은 子宮內裝置, 避姪藥에 限定되고 나머지 精管術, 周管術과 月經調節은 無料이다. 여기에 現行 目標量制度가 內包하는 問題가 있다. 手數料의 目的인 그 水準이 避姪目標量達成과 避姪效果(繼續使用率, 副作用 등)에 어떻게 作用하여 一般商業網과는 어떤 關係에 있는지 光明해 有必要가 있다.

避姪受客性 提高라는側面에서 볼때 特히 農村의 경우 保健所組織網이 對象者에 便利할 때도 있지만 實上對象者가 避姪費用 때문에 政府普及避姪藥劑를 供給받고 있는가의 問題이다. 不姪術과 月經調節의 경우에도 對象者の 避姪態度가 確固함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供給한 無料 서비스를 希望하고 있으므로써 그 빙은 目標量을 消化하고 있는가에 對해 再檢討를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不姪術이나 月經調節은 手數料가 전혀 없지만 혹시 對象者的 負擔은 있는지 施術醫의 競爭關係로 對象者誘致을 위한 費用은 施術서비스의 質과 對象者에 對한 事後管理 소홀等의 문제는 있는지 事業內部에 對해 調査가 必要가 있다. 1988年 부터 農漁村에 醫療保險이 實施되고 1989年 부터는 全國民이 醫療保險에 該當되는 持保險狀態에 있음을 考慮할 때 避姪施術의 全額無料 問題는 現在 有料化 方向에서 檢討되어야 한 것이다. 换言하면 現在 政府가普及하는 避姪施術은 子宮內裝置처럼 不姪術이나 月經調節에서도 保險酬價上의 本人負擔이 1/5程度, 手數料化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醫療保險에서의 施術을 延長하고 그것이 費用때문에 受客이 어렵다면 政府普及分으로 對替하는 方法도

考慮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現行 目標量 制度 上의 無料 施術 씨비스는 量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一般的 理論이 되겠지만 家族計劃 草創期부터 實施해온 無料政策은 그동안의 生活水準 向上과 함께 有料政策 内지 商業網 活性化 政策으로 轉換해야 할 妥當性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考慮할 때 現行 目標量 中 特히 不姪術 目標量은 너무 높다고 말할수 있다. 1984년의 不姪術 使用者의 83%가 政府普及에 依한 無料受惠者라는 것은 時代의 逆行現象인 것 같고 이것을 점차 낫추어 나가各自의 負擔으로 施術에 臨하게 해야할 問題가 있다.

아울째로 目標量 節減에 따른 家族計劃 事業費의 活用問題이다. 만약에 目標量을 절감할 경우 家族計劃 事業費는 그만치 減少하게 될것 아니냐는 質問이 생긴다. 그러나 이 點에 對해서는 現行 目標量制度에서 생기는 量의 事業으로부터 質의 事業으로 轉換하면 오히려 事業豫算이 不足할수도 있다. 즉 家族計劃 事業의 弘報費를大幅擴大하고 씨비스의 質을改善하기 위하여 受容前後의 管理를 첨적히 하며 保健教育을 包含한 母子保健쪽을 보다 強力히 推進할 경우 家族計劃豫算(財政)은 더 많은 所要가豫想된다. 더욱이 앞으로의 地方化時代에 對備하여 市·道別로 事業計劃, 事業執行 및 事業評價를 委任하였을 경우 여기에 所要되는 經費도 적지 않음을 考慮할때 家族計劃豫算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現行 目標量 制度下에서의豫算編成이 보다伸縮性 있게 이루어져야 할 問題가 있다.

以上에서 現行 目標量制度에서의 矛고 矛은 問題點을 나열하였고 그때그때 改善方向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이 問題點들과 함께 向後 目標量制度를 어떻게 改善해야 할 것인지 다음 章에 所見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V. 現行 目標量制度의 改善方向

現行 目標量制度를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提言코자 한다.

1) 現行 目標量制度는 長期的인 眼目에서廢止되어야 한다. 6次5個年 計劃期間(1987~1991)에는 現行制度를 調整補完하되 目標量을 減縮하는 方向으로 家族計劃 事業이 推進되어야 한다.

2) 人口目標와 家族計劃 目標量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바, 人口目標의 早期達成에 執着한 나머지 保社部는 이의 實現을 위해 過渡한 目標量 特히 不姪目標量을 策定하고 있어 一線 從事要員에게 重壓感을 주고 있다. 이러한 重壓感은 實績為主의 形式的 事業成果에만 須臾하여 真實한 家族保健事業으로서의 家族計劃을 普及하는데 隘碍이 있으므로 現行 目標量은大幅 減少해야 한다.

3) 現行 目標量을 減少할 경우 만약에 追加需要가 있다면 이에 之가 應할수 있도록 事前對備策(豫算·物量等)이 물론 講究되어야 한다.

4) 現行 目標量의 策定範圍는 1987現年水準으로 子宮內裝置가 約 15万件, 不姪術 역시 約 20万件, 콘돔이 5万個(月) 程度이며 避姪藥은 그대로維持한다. 月經調節 역시 約 14万件(不姪術과 一起) 實際策定한 21万件의 2/3수준으로 目標量의縮小調整이 要望된다(表7 參照).

5) 이렇게 目標量을 減縮해도 人口目標達成은 無理할것으로豫算된다. 나아가서 1988年에 實施할出產力調查 結果를 銳意 檢討하여 政府目標量을 再整理할必要가 있다. 만약에 出產力이期待以上으로 低下되고 있다면 앞에서 指摘한 目標量 減縮은 더果敢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避姪씨비스의 有·無料構成比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現行 目標量配定의 合理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政府組織網을 通한 避姪需要測定을 市·道에 맡겨 下向式 割當보다는 上向式 自律普及 制度를 確立할必要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地方化時代에 걸맞는 政策配慮로 볼 수 있으며, 事業이 보다 발달하고 活性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의 實現을 위해서는 市·道가 活用할 수 있는 研究·評價費를 中央에서策定하여 마련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現行 目標量制度에서의 事業競進 雾圍氣와 그저 目標量 對 實績의 評價體系는 再考를 要한다. 再考範圍는 每年 開催되는 家族計劃의 評價大會의 內容變更과 事業實績의 環流資料등 市·道間의 競爭霧圍氣를 緩和하는 方向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家族計劃 事業이 이제 物量為主普及을 脱皮하여 차분하게 그리고 良質의 씨비스를 주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數年間(1980~1987) 事業目標量을 超過達成하고서 一時의

避妊方法外에는量의으로吸收해야 한對象이 줄어들었고 實需要者는 自費이간 政府受惠이간間에 避妊態度가 確立되어 良質의 씨비스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8) 家族計劃事業의 目標量이 減縮될 경우 名實相符한 母子保健事業과의 統合接近이 試圖되어야 한다. 家族計劃事業費는(人口抑制事業費)는 母子保健事業費의 一環으로 取扱되어야 하며 財政이 統合되었을 때 보다 効率의 母子保健과 家族計劃事業이 統合의으로 推進될 수 있을 것이다. 이 統合의 인接近은 農村과 都市低所得層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實効性있게 推進하기 위해서는 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訓練, 事業地域의 씨비스處擴充, 專門要員의 養成과 確保, 이에 따른 待遇問題등 全國에 散在한 母子保健 센터와 그와 類似한 都市地域의 低所得層을 위한 母子保健센터의 開發問題등 真摯한 檢討가 要望된다.

9) 現行家族計劃制度는 政府主導型 家族計劃事業이 存在하는限 하나의 統制手段으로서의 事業量을 中心으로 한企劃·執行·評價過程上의 制度이다. 그러나 可姪婦人이 스스로 避妊問題를 解決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目標量制度는 必要 惡의인 存在인 것은 分明하다. 따라서 앞으로 면 將來를 대다볼때 우리나라로 先進國처럼 終局의으로 商業網에 依存한 家族計劃이 普及되어야 하고 自律의으로 實施되어야 한다. 물론 自費로 解決하지 못한 階層에 對해서는 政府補助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目標量制度의 廢止에 앞서 目標量의 自律調整 및 減縮速度를 試驗하기 위해 示範道를 定하여 事業展開를 試圖해 볼만하다.

家族計劃事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政府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 事業으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는 기준의 目標量制度를 市·道의 希望에 따라 事業量을 設定하는 方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VI. 結語

1970年代 中盤부터 現行 目標量 制度에 對해 論難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커다란 施行錯誤가 없이 比較的 成功의으로 維持·發展되어 왔다. 그러나

6次5個年計劃期間에는 從來에 찾아볼 수 없는 目標量의 寡多問題, 物量普及에 따른 事業의 質의 問題, 그리고 避妊嗜好에 따른 普及問題등 現行 目標量制度에 隨伴한 諸般問題가 檢討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있다. 本考는 이러한 見解에 對해 일리가 있다고 判斷하여 現行 家族計劃事業 目標量制度에 對해 既存資料에 依據 綜合의 檢討를 試圖하였다. 그結果 앞에서 指摘한 問題點을 提示하였고 이에 따른 改善方向을 論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과 改善方向은 事業從事者나 이 分野의 專門家와 見解差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現行 家族計劃事業 目標量制度에 對해서는 보다 廣範圍한 見解綜合이 必要하며 그에 따른 政策轉換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서 現行 目標量制度와 關聯한 諸般事項 즉 目標量을 消化하기 위한 對象分析(各種指標面에서), 施術씨비스를 담당하는 指定醫關係, 正規職 以外의 要員, 業務環境等 廣範圍하게 考察하지 못한것을 역시 아쉽게 생각한다.

要約컨대 現行 目標量制度는 市·道水準에서 너무 重壓感을 느끼지 않고 充分히 提供할 수 있는 事業量으로 轉換되어야 하고 終局의으로는 政府事業量은 自費負擔에 依해自身이 解決하지 못한 對象者에게 限定하여 良質의 씨비스를 提供하는 方向에서 事業이 遂行되어야 한다.

한편 少子女 價値觀의 確立과 그에 따른 避妊 씨비스의 便宜性을 提高하기 위한 弘報役割이 보다 多樣하게 強化되는 等 現行 目標量制度下에서의 目標量 縮小調整과 그에 隨伴한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의 全般的인 事業推進戰略이 再評價 되어야 할 段階에 이르렀음을 強調코자 한다.

## 参考文獻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推計人口('85센서스 結果를 基礎로한 長期人口展望), 1986.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5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 確定結果 報告, 1987.

保健社會部, 家族保健事業 參考資料, 1985.

- 保健社會部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家族計劃事業、  
進度評價(1987. 1~6월 기간)』, 1987.
- 保健社會部(未發刊), 1987 市·道家族保健係長, 會議  
資料, 1987. 11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年會向國家長期發展構  
想(人口與保健醫療期間), 1985.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年度家族保健事業評價大會  
報告書, 1987.
- 高甲錫, 金炳淑, 家族計劃事業目標量 綜合評點制度  
示範事業結果報告, 1976.
- 高甲錫, 最近의 避姪實踐水準과 出產力 推移에 關한  
考察, 韓國人口學會誌, 第8卷, 第2號, 1985.
- 孔世權外, 家族計劃事業目標量制度改善研究, 家族計  
劃研究院, 1979
- 孔世權外, 韓國家族計劃事業(1961~1980), 家族計劃研  
究院, 1981.
-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推移와 展望, 人口政策 세미나  
資料, 1987.
- 李任田, 李時伯, 自費負擔家族計劃受容可能性에 對한  
調查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9.
- 趙南勳, 人口增加抑制政策의 推進方向, 人口政策 세미  
나 資料, 1987.
- J. A. Ross, et. al., "Cohort Trends in Sterilization  
: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13, No 2, June 1987.
- Nam-Hoon Cho, Family Planning Target Setting  
and Allocation in Korea, Trainning Workshop  
on Family Planning Policy and Program  
Management, KIPH, 1987.
-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ROK,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the Repu-  
blic of Korea, 1970.
- T. I. Kim, J. A. Ross and G. C. Worth,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The Pop-  
ulation Council, New York, USA, 1972.